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4
----------	-----------

2010년 12월 29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수정이유

조례의 공포에 따른 대부료 요율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.(부칙 안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안제2조(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) “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”를 신설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칙 <u><신설></u>	부칙 <u><신설></u>	부칙 <u>제2조(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</u>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, 제4항을 제5항으로,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.
1.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5 이상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6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5 이상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u></p>
<p>③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5 이상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</u>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~12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) 제 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</u></p>